

「도로교통법」 일부개정 건의안

서울특별시의회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43조,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과 위임·위탁에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일원화 및 업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행정 확보 및 자치구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의 내실화를 다지고자 다음과 같이 법률개정을 건의한다.

「도로교통법」, 「도로교통법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도로교통법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① 제143조(시·군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) ①시·군공무원.....의 ①항을 시·군·구공무원.....으로 개정
- ② 시·군공무원.....의 ②항을 시·군·구공무원.....으로 개정
- ④시·군공무원.....의 ④항을 시·군·구공무원.....으로 개정

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(위임 및 위탁)

②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.

3. ....(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)중 팔호안의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

## 신 구조문 대비표

### □ 도로교통법 제143조 개정건의

현 행	개정(안)
제143조(사고구급구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) ①사고구급구원은 제15조제3항 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(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)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고,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노획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. <개정 2006.7.10>	제143조(사고구급구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) ①사고구급구원은
②사고구급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절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	②사고구급구원은
③(생략)	③(현행과 같음)
④사고구급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거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.	④사고구급구원은

### □ 도로교통법시행령 86조2항 개정건의

현 행	개정(안)
제86조(위임 및 위탁) ②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경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.<개정 2008.6.20> 1. 제12조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(구 및 군 소속공무원에 한한다)의 임면권 및 법 제8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에 대한 조치권한 2.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 의 대행에 관한 권한 및 동조제3항에 따른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 관련 조치·교육에 관한 권한 3.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(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)	제86조(위임 및 위탁) ②(현행과 같음)  1.(현행과 같음) 2.(현행과 같음) 3.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<삭제>